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절차 관련 협조 요청

1. 의료자원정책과-595 (2016.01.12.) 호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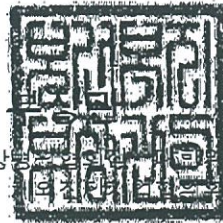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5.9.21.)을 통해 민원인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3. 다만, 동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의료기술의 평가 대상 여부 등을 회신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통보문 등으로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갈음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를 통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업체 및 관계기관 등에 안내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



수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약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정학회장, 대한치위생학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주무관

안제현

행정사무관

강슬기

의료자원정책 전결 2016. 1. 14.

과장

임을기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749

(2016. 1. 1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 / <http://www.mw.go.kr>
등)

전화번호 044-202-2456

팩스번호 044-202-3942

/ ajh0909@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